

#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

EU Non Tariff Barriers Issue

## 유럽연합, EU 반입을 위한 동물 건강증명서 및 공식증명서 규정 개정 (2024년 7월 29일 발효)



### 유럽연합 집행위원회, 특정 범주 동물 및 물품의 이동에 대한 공식증명서 등 양식 관련 규정 개정

2024년 7월 9일, EU 집행위원회는 '특정 범주의 동물 및 물품의 유럽연합 반입 및 유럽연합 내 이동에 대한 동물 건강증명서, 공식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의 양식에 관한 공식 인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시행규정' 「(EU) 2020/2235」을 개정하여 「(EU) 2024/1874」를 발표함

1. **배경** :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행규정 「(EU) 2020/2235」를 통해 특정 유형의 동물 및 물품의 유럽연합 반입 및 유럽연합 내 이동을 위한 증명서 양식을 안내하였음. 또한, 부속서 III과 IV를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한 특정 동물성 제품과 복합제품의 유럽연합 반입 규칙을 설명함. 이번 개정안을 통해 **식용 젤라틴\* 또는 콜라겐을 함유한 복합제품\*, 반추동물의 뼈에서 추출되지 않은 특정 젤라틴 캡슐\*의 공식증명서, 식용을 위해 고도로 정제된 제품의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증명서 양식 등을 개정하여 발표함**

\* 식용 젤라틴을 함유한 복합제품: 과일주스와 설탕을 포함한 젤라틴 기반의 디저트, 푸딩, 사탕 등

\* 콜라겐을 함유한 복합제품: 콜라겐을 첨가한 음료, 단백질바, 가루 형태의 콜라겐 보충제 등

\* 반추 동물의 뼈에서 추출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: 캡슐 형태의 비타민, 오메가-3 캡슐, 허브 추출물을 포함한 보충제 캡슐

## 2. 주요 내용

1) **시행규정 (EU)2020/2235 개정 사항** (일부 내용 발췌, 상세 규정은 [원문](#) 및 원문 하단의 부속서 III 참고)

구분	개정 내용
제 19조	반추동물의 뼈에서 유래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외 식용 젤라틴의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공식증명서 양식이며, *부속서 III의 41장에 설정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 <b>GEL 양식*</b> 과 일치해야 함 * GEL양식 - 젤라틴의 원산지 및 제조 과정을 증명하며 반추동물 뼈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을 확인, 식품 안전 규격을 준수함 보증
제 24조	(EC) No 853/2004의 부속서III의 XVI파트에 설명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고도로 정제된 제품의 EU 반입을 위한 공식증명서 양식이며, 부속서 III의 46장에 설정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 <b>HRP 양식</b> 과 일치해야 함 *HRP 양식 - 고도로 정제된 제품의 정제 수준과 안정성을 증명하고, 제품의 원산지 및 제조 과정을 명시, 인간 소비에 적합함을 보증

구분	개정 내용
제 28조	<p>반추동물 뼈에서 유래되지 않은 젤라틴을 제외한 모든 육류 제품 및 초유 기반 제품을 함유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온·비상온 복합제품의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동물 건강/공식증명서 양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온 복합 제품의 유럽연합 반입에는 제1조(3) (b)(i)항에 언급된 동물 건강/공식증명서가 사용되어야 하며, 부속서 III의 50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<b>COMP 양식*</b>과 일치해야 함</li> </ul> <p>*COMP 양식 - 복합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원산지 및 안전성을 증명, 반추 동물 뼈에서 유래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함을 확인,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보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문단에 언급된 인증 요건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고 아래 성분이 포함된 상온 복합제품의 유럽연합 반입에도 적용됨</li> </ul> <p>(a) 반추동물 뼈에서 추출하지 않은 젤라틴, 반추동물 뼈에서 추출하지 않은 콜라겐 및 고도로 정제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육류 함유 제품</p> <p>(b) 초유 기반 제품</p>
제 30조	<p>젤라틴, 콜라겐 및 고도로 정제된 제품을 제외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온·비상온 복합제품 중 육류 제품과 초유 기반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, 즉시 운송 또는 유럽연합 내 보관 후 유럽연합을 통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동물 건강/공식증명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속서 III의 52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<b>TRANSIT-COMP 양식</b>과 일치해야 함</li> </ul> <p>* TRANSIT-COMP 양식 - 유럽연합 내 경우 시 제품의 안전성과 원산지를 증명, 제품이 유럽연합 내에서 안전하게 보관 및 이동됨을 확인, 제품의 원산지, 성분 및 안전성을 명시함</p>

## 2) GEL, HRP, COMP, TRANSIT-COMP) 양식 검증 과정 및 발급 절차

- 공식 수의사 : 제품의 건강 상태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증서를 발급
  - 식품 안전 관리 기관 :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경우, 해당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증서를 발급 (예:HACCP)
  - 제약 규제 당국 : 제약용 제품의 경우, 제약 규제 당국에서 제품의 정제 수준과 안전성 검증 및 인증서 발급
- \* 국내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다 하더라도, EU수출 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나 검토 절차를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, EU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출 전에 EU 관련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

## 3) 유예 기간 적용

**2025년 4월 29일까지**의 과도 기간 동안,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(EU) 2020/2235 이행 규정 제28조에 언급된 식용 특정 복합제품에 적절한 동물 건강/공식증명서가 첨부된 경우(부록 III의 50장에 제시된 양식으로 **2025년 1월 29일까지 발급된 인증서**) 유럽연합으로의 반입이 승인됨

## 3. 발효일 : 2024년 7월 29일

### 출처